

부산지방법원 2021. 8. 26 선고 2019가단22339(본소), 2021가단325932(반소) 판결 [건물철거  
등 ·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소송대리인 B

피고(반소원고) 1. C

2. D

3. E

피고(반소원고)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

담당변호사 김인일

변 론 종 결 2021. 7. 8.

판 결 선 고 2021. 8. 26.

## 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들은 원고(반소피고)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대 133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, 26, 14, 24,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부분 1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G 대 166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, 13, 12, 28, 27,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ㄴ’ 부분 1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3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.
5.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 제1항 및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.)들은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.)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1)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주문 제2항과 같다.

## 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### 1. 인정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F 대 133㎡(이하 ‘원고토지’라 한다.)의 소유자이고, 피고들은 인접한 G 대 166㎡(이하 ‘피고토지’라 한다.)를 피고 C이 3/7 지분, 피고 D, E이 각 2/7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.

나. 원고와 피고들은 각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, 원고는 피고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, 13, 12, 28, 27,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ㄴ’ 부분 1㎡를 점유하고 있고, 피고들은 원고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5, 26, 14, 24,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부분 1㎡를 점유하고 있다.

### 2. 판 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토지 중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같은 감정도 ‘ㄱ’

부분 1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,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토지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감정도 ‘ㄴ’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 나.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들이 원고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데 대하여 월 300,000원씩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, 위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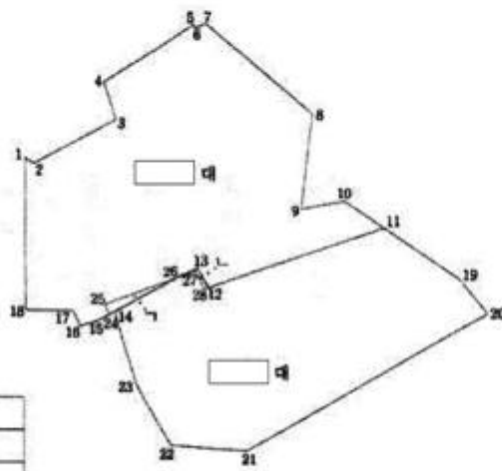
### **3. 결 론**

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,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오규희

# 감 정 도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외 1필



| 형태   | 명칭  |
|------|-----|
| ——   | 지적선 |
| ---- | 현황선 |

## 감 정 내 역

| 지번 | 부호 | 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(m <sup>2</sup> )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| ㄱ  | 25, 26, 14, 24, 25 을 순차연결한 선     | 1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text"/> 건물사용부분 |
|    | ㄴ  | 26, 13, 12, 26, 27, 26 을 순차연결한 선 | 1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text"/> 건물사용부분 |

1)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기산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.